

신한OK스탁론Top 계좌운용규칙(마이너스/증액식)

2018.07

1.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 규칙

1)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

매매시간		07:30 ~ 16:00 (장중거래: 매수/매도가능, 시간외증가거래: 매수/매도 가능) ※ 시간외단일가거래불가, 예약매매 불가 ※ 로스컷발생일(반대매매실행일): 장전시간외증가 매도만 가능
금융 거래 시간	대출, 추가대출	08:00 ~ 16:00 (단, 추가대출은 08:30부터 가능,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)
	일부상환/중도해지	08:30 ~ 16:00
	이 자 출 금	16:00 부터 (전액출금방식: 현금부족 시 미인출 또는 출금 후 담보율 120% 이하 미인출)
	만 기 상 환	16:0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
	로 스 컷 출 금	16:00 부터 (부분출금 가능)

※ 고객 매매주문은 지정가, 시장가로만 가능합니다.

(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, 최우선지정가 주문 불가, 예약매매 등 불가)

2) 거래가능종목

거래가능종목	- 가능종목 : KOSPI,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 및 ETF 종목 (일부종목 거래불가) - 불가종목 : 제3시장(KONEX)상장주식, 투·융자회사, 수익증권, 신주인수권, 채권, ELW, ETN 등 가능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
거래유형	100% 현금거래에 한함. (신용거래/공매도/미수거래 불가)

3)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

매매거래금지종목	매수	보유	보유금지시점	비 고
①관리종목	불가	불가	편입 후 재거래 즉시	
②거래정지예정종목	불가	불가	거래정지 전일	
③권리락종목(배당락 제외)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(권리락 전일)	
④감자/합병/분할/액면변경 등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	
⑤투자환기/경고/위험/단기과열종목	불가	-		☞ 일별조회
⑥액면가 100% 이하 종목	불가	-		☞ 전일기준
⑦시가총액 100억 미만 종목	불가	-		☞ 전일기준

⑧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	불가	-		☞ 일별조회
⑨신규상장종목	불가	-		☞ 상장일에 한함
⑩최근7영업일간 추가하락 50% 이상 종목	불가	-		☞ 일별조회
⑪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	불가	-		☞ 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
⑫보호예수 해제종목	불가	-		☞ 해제 후 5영업일간
⑬5일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종목	불가	-		☞ KOSPI200, KRX100 제외
⑭권리발생 예정종목	불가	-	반대매매 예정일 5일전부터	☞ 유증,감자 등 예정종목
⑮정리매매종목	불가	불가	정리매매시작일	
⑯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	불가	-	지정즉시	4. 기타사항 참조

- ※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이 불가하며,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 가능합니다.
- ※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은 가능하나, 해당종목은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※ 고객이 “보유불가”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.
- ※ 보유/매수금지시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4) 기타거래제한

포트폴리오제한	동일종목당 최대매수가능금액은 계좌평가금액의 5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매수동결제한	장중 담보율이 120%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매수가 불가능합니다. (120%초과시 매수가능)
동일종목매수제한	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, 본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1% 이하로 제한합니다.
유동성제한	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% 이상은 매수가 금지됩니다. ⇒ 신규등록주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을 기준으로 함
시스템자동제한	리스크관리시스템(RMS)에서 고객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은 매수가 금지됩니다. ※ 시스템자동제한 예시 ① 스타론 이용 전체고객의 보유수량 합계가 해당종목 총상장주식의 1%이상인 경우 매수금지(단일종목집중제한) ② 연속적자 발생기업 등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횡령/배임 등 발생기업 ④ 기타 이상급등락 등 고객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※ 시스템자동제한 종목 및 기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주식매수청구권행사제한	대출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.
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	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을 보유한 경우 매수가 제한됩니다.

5) 입고 및 출고

- ◆ 주식출고 : 불가능
- ◆ 주식입고 : 가능(단, 매수/보유불가종목 입고불가, 현물입고 및 타사입고 불가)
 - ※ 리스크관리시스템(RMS)의 제어를 받지 않고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주식이 보유불가 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입고 전에 반드시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종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 - ※ 신주인수권 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일반종목이 아닌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, 해당종목은 매매 불가합니다.

6) 증권계좌 담보비율산정

- ◆ 담보비율산정 = 계좌평가금액/대출원금
- ◆ 계좌평가금액 = 주식잔고평가금액 + 예수금
 - 주식잔고평가금액: 보유주식수×현재가
 - 예수금: D+2일 예수금
- ◆ 대출신청 및 출금 시 매수금지종목을 보유하는 경우: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됨
- ◆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의 보유 시 담보율 평가 및 그에 따른 제한사항은 4.기타사항 참조
- ◆ 신주인수권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종목이 아닌 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 됨

2. 자동반대매매 규칙

1)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

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	자동반대매매 시기
① 장 후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120%이하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120%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	⇒ 오전 동시호가부터
② 보유주식 중 관리/거래정지로 편입예정	⇒ 편입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
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⇒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부터
④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	⇒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
⑤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종목 등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⇒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전일) 오전동시호가부터
⑥ 대출해지 사유 발생(연장조건미달/만기경과/기한의이익상실) 후,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	⇒ D+1일 오전 동시호가부터
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	⇒ 정리매매시작일

※ 정리매매종목 주문가격 : 최저호가(1원)

※ 권리락 및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: 반대매매실시 전 2회 발송 (1일전 및 3일전)

2) 로스컷 반대매매

로스컷이 발생하는 경우	<p>◆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로스컷 반대매매가 실시됨</p> <p>① 자동로스컷: 장후종가기준 120%이하 도달 계좌 중 익일 오전 08:45까지 담보비율 120%를 초과하지 못한 계좌</p> <p>② 금융기관 강제로스컷 : 대출해지(연장조건미달/만기해지/기한의이익상실)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⇒ 당사에서 로스컷 자동반대매매 신청(강제해지전문 발송) 시 로스컷 실행 주) 제3자가 증권계좌에 (가)압류 조치를 한 경우, 고객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됨.</p>
로스컷 반대매매 실행	<p>① 반대매매 금액: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</p> <p>② 반대매매 수량: 로스컷발생일(반대매매 실행일)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계산</p> <p>③ 반대매매 순서: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</p> <p>i) 매수/보유불가종목</p> <p>ii) 시가총액 상위종목(전일 기준)</p> <p>◆ 하한가/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반대매매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, 다음순위의 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됨(5분 간격 재실행)</p> <p>◆ 반대매매는 장중, 장후시간외종가, 시간외단일가 거래를 통해,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 될 때까지 실시됩니다.</p> <p>◆ 로스컷이 발생한 증권계좌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,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된 주식이 즉시 반대매매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로스컷 경고SMS	<p>◆ 로스컷 경고SMS는 반대매매 발생전 총 5회 발송됩니다.</p> <p>- 장 중 : 계좌 담보율 125%, 123% 도달시 및 120% 도달시 발송</p> <p>- 장 종료 후 : 계좌 담보율 120%이하 계좌를 대상으로 18:00에 발송</p> <p>- 익일장시작전 : 계좌 담보율 120%이하 계좌를 대상으로 07:30에 발송</p> <p>단, 장중 경고 SMS의 경우,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고객은 금융기관(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아 발생하는 SMS미수신 및 이로 인한 반대매매 발생 등의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 (4. 기타사항 참조)</p>
대출해지 유예기간	<p>◆ 로스컷 발생 계좌의 경우,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, 계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① 로스컷 발생일(반대매매일)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15:30까지)에 현금 입금해야 함 (현물제외)</p> <p>② 현금 입금 후 담보비율 125%이상을 유지해야 함</p> <p>◆ 대출해지 유예기간 중이라도 고객이 직접 대출홈페이지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 가능합니다.</p> <p>◆ 5영업일 15:30 경과시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됩니다.</p> <p>◆ 로스컷발생 사유 중 ②금융기관 강제로스컷(연장조건미달/만기해지/기한의 이익상실)시에는 “대출해지 유예기간”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대출 실행 후 15일 이내에 로스컷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"대출해지유예기간"을 로스컷 반대매매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로 확대 할 수 있습니다.
로스컷 출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로스컷 출금 : 원금/이자 일괄청구방식, 부분출금 가능 ◆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,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. ◆ 연체이자율 : 대출약정금리 + 3%(단,법정최고금리 이내)

3. 대출약정 및 스타론 서비스규칙

약정체결 전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 :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 ② 연령제한 : 민법상 성인 이상(미성년자 대출 불가) ③ 신용등급 : CB등급 기준 1등급 ~ 7등급 (8등급 ~ 10등급 대출 불가) 단,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체, 신용관리 대상자, 개인회생,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 제외 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,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④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3억원 이내 ⑤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⑥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설정 신청한 고객(온라인질권설정) ⑦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아닌 개인 ⑧ 증권계좌 내 보유불가종목이 없는 고객 : 있을 경우 매도 후 대출가능 								
대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대출기준금리 : 대출시점 홈페이지 고시이율에 따름 ◆ 대출기간 : 6개월 (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) ◆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 ◆ 연체금리: 대출약정금리 + 3% (단,법정최고금리 이내) ◆ 대출한도 : 담보평가금액별 차등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padding: 5px;">담보평가금액</th> <th style="padding: 5px;">대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5천만원 이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1억원 초과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담보평가금액	대출한도	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
담보평가금액	대출한도								
5천만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								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								
1억원 초과	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								
대출한도 설정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최대대출한도 내에서 고객이 직접설정 가능함 단, 개인별 주식매입자금대출 합계금액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◆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일부상환과 추가대출이 가능함 								

<p>한도증액 및 감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한도증액 및 감액신청: 신한저축은행 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◆ 한도증액은 신규약정체결조건 ①~⑧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하여 신청가능 ◆ 증액가능금액 (계좌평가금액 - 대출잔액) X 대출한도(비율) - 증액 전 대출한도설정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평가금액 산정 시 매수불가종목 제외 됨 - 대출잔액이란 한도증액 실행 전 대출잔액을 의미함 ◆ 대출금리: 최초 대출금리와 동일(단, 만기연장 시 연장시점의 대출기준금리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가 대출금액에 따라,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음 ◆ 대출만기: 최초 대출 만기일자와 동일 <p>* RMS 서비스이용료 폐지에 따라, 2018년 7월 2일 이전에 실행된 스탁론의 한도증액은 불가함 <시행일 : 2018.07.0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타조건: 연체금리, 중도상환수수료, 대출한도는 신규대출조건과 동일 ◆ 한도증액 및 감액 : 1일 1회만 가능
<p>한도내 추가대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추가대출신청 : 신한저축은행 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◆ 추가대출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추가대출 후 담보율이 133% 이상인 경우 ②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금액 이하인 경우 ③ 계좌내 보유불가종목이 없어야 함 <p>※ 단, 추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종목은 제외됩니다.</p>
<p>일부상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일부상환신청 : 신한저축은행 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◆ 일부상환조건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상환 가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(대출원금 및 이자금액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② 일부상환 후 담보율이 상승하는 경우
<p>현금인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인출 후 담보율 135%를 초과해야 함 ② 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이 5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◆ 인출가능금액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됨 Min(계좌담보평가금액-대출원금X135%, 계좌평가금액-단일종목평가액/50%, D+2일예수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계좌평가금액 :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은 제외됨 ☞ 단일종목평가액 : 보유주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함 ◆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,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연장신청: 신한저축은행 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◆ 연장조건: 다음의 연장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장 처리 됨 (단, 신용관리대상자, 채무불이행/연체종인 고객은 연장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① ~ ⑦ 해당고객 ② 약정만기일(D일 16:00) ~ D-7일(영업기준일) 사이에 온라인 연장신청 고객 ③ 증권계좌담보비율 124% 이상인 고객 ④ 증권계좌 내에 만기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◆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 만기 처리(만기일에 따라 이자납입일 변경됨) ◆ 당월이자 전액출금 방식: 인출금액이 부족할 경우 연장불가 ◆ 연장 시 유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께서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, 계약만기일에 상환할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 대출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- 연장조건 미충족시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, 익영업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상환완료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. 이 경우, 계약 해지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,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 입고를 하셨을 경우, 입고된 주식이 반대매매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-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인 경우, 연장이 불가합니다. -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(이자연체, 신용조건 미달, 연락두절 등)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해당계좌에 대한 신규매수 및 인출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. - 연장 시 대출조건(이자율 등)은 회사의 사정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해지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담보비율 120% 이하로 인한 자동로스컷 처리된 경우 ◆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RMS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◆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(주)씽크풀(위험관리시스템 제공업체)이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(주)씽크풀은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

4. 기타사항

- 1)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을 보유한 경우(“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” 이라 함), 해당종목의 평가액을 제외한 담보율이 로스컷담보율(120%) 이하인 경우 계좌사용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- ①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의 보유 시 제한사항

구 분	제한사항	비 고
담보율 120% 이하	매수금지	담보율은 상장폐지실질심사종목 등을 제외한 후 계산된 담보율을 의미함
담보율 120% 초과	-	

- ② 담보율 120% 이하로 인하여 매수가 금지된 경우, 신규매수를 위해서는 입금을 통하여 담보율이 120% 초과되도록 계좌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.

2) 인지세 : 대출실행 시 다음과 같이 대출금액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.(인지세법 제 2조 제 3항)

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	세 액	비고
5천만원 이하	비과세	인지세는 저축은행이 50%, 고객이 50% 부담합니다.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	70,000원	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0,000원	

- 3) 고객은 스탭론 계좌 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금융기관(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①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대출여신기관과 증권사 모두의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② 금융기관에 담보율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·연장·주식신규매수·인출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4) 금융투자협회의 [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]에 의하여,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탭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대출·연장·주식신규매수·인출거래 제한)
- 5)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하여야 함.

<스탁론 이용목적 위반 예시>

- ① 타인명의를 이용한 계좌 운용
- ② 복수계좌를 이용한 대규모 담보대출
- ③ 기타 시세조정을 위한 대출이용이 의심되는 경우

※ 해당 계좌운용규칙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